

위원회 규정

제정 1986.12. 3	개정 1998.12.24	개정 2007. 4. 1	개정 2012. 3. 1	개정 2018. 3. 1
개정 1989. 3. 1	개정 1999. 3. 4	개정 2008. 7.30	개정 2013. 2. 6	개정 2018. 5.29
개정 1989. 5.29	개정 2001. 6. 1	개정 2008.12.16	개정 2013.11. 1	개정 2019. 6.17
개정 1992. 5.18	개정 2003. 5.29	개정 2009. 9. 1	개정 2014. 2.25	개정 2019. 8.11
개정 1995. 3. 1	개정 2004. 3.18	개정 2009.12. 1	개정 2015.10.23	개정 2020. 1. 1
개정 1995. 7.10	개정 2005. 7. 6	개정 2010. 3. 1	개정 2016.10.26	개정 2020. 3. 2
개정 1996. 3. 1	개정 2005.12.23	개정 2010.11.26	개정 2017. 3. 1	개정 2020. 4.17
개정 1997. 4. 1	개정 2006. 5. 3	개정 2011. 3.14	개정 2017. 8. 1	개정 2020. 9.25
개정 1998. 1. 7	개정 2006.10.12	개정 2012. 1. 1	개정 2017. 9. 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내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본 대학내 설치된 모든 위원회는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8.1.)

제 3 조(설치허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

제 4 조(구분) 위원회에는 상위법 및 본 대학 제규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는 대학승인 위원회와 별도 승인을 거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개정: 2017.8.1.)

제4조의1(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야에 따라 나누어 운영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8.1.)

제 5 조(임명·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개정: 2016.10.26.)

제 6 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6 조의1(직무대행) ①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장의 직근 상급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0.23.)

② 위원의 부재 시에 위원장은 위원 임명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의 대리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8.1.)

제 7 조(소집·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총장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교무위원회 및 상위법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원회 간에 안건의 중복심의를 하지 않는다. (신설: 2017.8.1.)

제 7 조의1(원격통신수단을 통한 화상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설: 2020.9.25.)

②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화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화상을 통해서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 구체적인 참석방법 및 결의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5.)

③ 회의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화상을 통해 출석하고 의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한다. (신설: 2020.9.25.)

제 8 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돕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 9 조(회의비)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학 사 위 원 회 <삭제>

제10조 (삭제: 2008.7.30)

제10조의 2 (삭제: 2008.7.30)

제10조의 3 (삭제: 2008.7.30)

제10조의 4 (삭제: 2008.7.30)

제 3 장 <삭제>

제11조 삭제: 2006.10.12)

제12조 (삭제: 2006.10.12)

제 4 장 기 획 위 원 회

제13조(구성) ①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직원으로 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직의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3. 장학금 및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소관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주요사항
5. 소관 주요제도의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 및 익년도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대학시설 건립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대학발전분과위원회와 시설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발전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기획위원회에 보고 한다.

1. 조직 및 정원검토
2. 학생정원의 판단
3. 예산편성 및 조정
4.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③ 시설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기획위원회에 보고 한다.

1.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물, 시설물의 이용 및 배치계획
3. 환경조성 계획
4. 기타 시설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분과위원)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상임위원) ① 분과위원회에 약간명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분과위원중에서 총장이 임한다.

③ 상임위원은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항을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④ 장애학생지원 조직의 장은 시설분과위원회에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한다.(신설: 2017.3.1.)

제 5 장 입 학 위 원 회(개정: 2008.12.16)

제18조(입학위원회) 입학위원회는 본 대학의 입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입학 전형에 참여한다. (개정: 2013.2.6)

제18조의1(구성) ① 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입학학생처장, 입학팀장 및 ‘포항공과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

한 지침’에서 정하는 입학사정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개정: 2019.6.17)

③ (삭제: 2013.2.6)

제19조(기능) ① 위원회는 입학전형에 참여하여 사정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시정책 및 입학전형계획
2. 입시요강 작성 및 주요 입시홍보정책
3. 기타 입시와 관련된 주요사항

제20조 (삭제: 2008.12.16)

제 6 장 연 구 산 학 위 원 회

제21조(구성) 연구산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

1.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3. 위원은 산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학과, 연구분야별로 안배하여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3.1)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1)

1. 산학협력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 및 연구사업 신청·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3. 장-단기 연구계획의 수립 및 연구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연구과제의 승인, 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제 수행 및 결과의 평가,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외연구비, 간접연구경비, 학술관련연구기금 및 산학관련 연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부설연구소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자체연구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연구업무 및 산학협력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10.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1. 학교기업, 산학협력지주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구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및 연구보안 관련 주요사항 (신설: 2019. 8.11)

제23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학 술 정 보 운 영 위 원 회

제24조(구성) ① 위원장은 학술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사안에 따라 소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내 건전한 전산 정보문화 조성과 관련된 주요사항
2. 학술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교내 정보처리 및 전산환경 구축 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서구입 예산안 심의 및 정책 건의
5. 기타 학술정보 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유통정보 심의기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유통정보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학 생 생 활 위 원 회

제27조(설치) 학생생활지도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위원회를 둔다.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학생처장, 기숙사 사감교수, 체육담당교수 및 각 학과 주임교수(또는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교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

제2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생활지도 정책에 대한 사항(학생단체의 등록 및 학생회칙 변경 등)
2.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단, 학사와 관련한 사항 제외)
3. 학부생 장학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4. 기숙사 및 대학원아파트 운영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입·퇴사, 사용료 부과 기준) 등

제 9 장 문화프로그램위원회(삭제: 2020.4.17.)

제30조(구성) (삭제: 2020.4.17.)

제31조(기능) (삭제: 2020.4.17.)

제 10 장 교 육 위 원 회

제32조(구성) ①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12)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대학원장, 입학학생처장, 교육혁신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인문사회학부 및 각 학과 대표로 교육에 관심있는 교원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10.12)

③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6.10.12)

제3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신설: 2005.12.23)

1. 교육비전과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6.10.12)
4. 교육인증제 및 이학, 공학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개정: 2006.10.12)
5. 기타 교육관련 주요사항

제 11 장 국제화위원회(삭제: 2014. 2.25)

제34조(구성) (개정: 2010.3.1)(삭제: 2014.2.25)

제35조(기능) (개정: 2010.3.1)(삭제: 2014.2.25)

제 12 장 POSTECH Academy Council(신설: 2009.12.1.)(삭제: 2016.10.26)

제36조(POSTECH Academy Council) (삭제: 2016.10.26)

제37조(구성) (삭제: 2016.10.26)

제38조(임기) (삭제: 2016.10.26)

제39조(기능) (삭제: 2016.10.26.)

제40조(운영비) (삭제: 2016.10.26.)

제 13 장 등록금심의위원회(신설:2010.11.26)

제41조(등록금심의위원회) 우리 대학의 예·결산 및 차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1.1)

제42조(구성) 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

1. 학교 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차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4조(회의록의 보존)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준용)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등교육법,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 14 장 에너지관리위원회(신설: 2011.3.14)

제46조(에너지관리위원회) 범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조력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Green Campus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에너지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7조(구성) ① 위원회는 부총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행정처장, 나노기술집적센터장, 가속기연구소부소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직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제4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심의
2.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 15 장 장비도입심의위원회(신설: 2012.1.1)

제49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 ①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도입과 공동 활용 촉진 등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 16 장 학위검증위원회(신설: 2012.3.1)

제50조(학위검증위원회) ①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신규 교직원 임용 후보자, 입학생,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제출한 학위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②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 17 장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신설: 2009.9.1)

제51조(구성)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 확보대책 수립
2.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4. 대학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5. 기타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 18 장 기금운용심의회(개정: 2018.5.29)

제53조(기금운용심의회) 대학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개정: 2018.5.29.)

제54조(구성) 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5.29.)

④ 기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8.5.29.)

⑤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금운용부서장으로 한다.(신설: 2018.5.29.)

제55조(운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5.29.)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8.5.29.)

- 1.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 2.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 3.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8.5.29.)

제 19 장 대학발전위원회(신설: 2016.10.26.)

제56조(대학발전위원회)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과 비전, 목표, 현재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대학 발전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각 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학과 및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1.1.)

제5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 및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의 발전전략과 가치 및 원칙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중점추진과제 설정, 실행에 관한 사항
3. 대학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세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대학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필요시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20 장 출판심의위원회(신설: 2017.9.7)

제60조(출판심의위원회) 교내 출판 의뢰에 따라 심의를 통해 우수한 콘텐츠를 발간할 수 있도록 출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61조(구성) ① 위원장은 학술정보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그 외에 학과 및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심의건별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간사는 학술정보팀장으로 한다.

제62조(기능) 위원회는 출판부에서 출판할 도서를 심의한다.

제 21 장 국책사업위원회(신설: 2020. 3. 2)

제63조(국책사업위원회) 대학의 국책사업 추진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책사업위원회를 둔다.

제6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연구처장, 산학처장, 학술정보처장, 행정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및 분석
2. 사업별 추진 방향 및 주체 구성
3. 사업 운영 및 개선 관련 사항
4. 기타 국책사업 수주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5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7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8장의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2008년 6월 2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시행일 전일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제18장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